

의학전문대학원 석·박사통합과정 운영세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가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, 본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‘대학원’이라 한다)에 설치한 복합학위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‘의무석사학위과정’이라 함은 의무석사(MD-MMS)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.
- ② ‘복합학위과정(MD-Ph.D)’이라 함은 의무석사(MD-MMS)과정과 의학박사(Ph.D.)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의무석사·의학박사(M.D.-Ph.D.)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.

제2장 입 학

제3조(모집인원, 입학자격) 복합학위과정의 모집인원 및 입학자격은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전형방법)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전형에서 선발하며, 필요에 따라 신입학 또는 4학기 이내 재학생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.(개정 2012.08.10)

제5조(선발기준 및 절차) 선발기준과 절차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, 석·박사통합과정(MD-Ph.D)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(개정 2012.08.10.)

제3장 지도교수

제6조(지도교수의 자격) ① 복합학위과정생의 지도교수는 본 대학원에 재직 중인 연구 실적이 우수한 전임교원 중 복합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2-3-4~2 제2편 학칙

- 제7조**(지도교수의 결정시기 및 절차) ① 복합학위과정생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입학이 결정된 즉시 복합학위과정의 학술박사학위 과정을 지도할 의사가 있는 교수의 실험실 로테이션과 인터뷰를 실시한 후 결정한다.
- ② 지도교수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, 복합학위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.

제4장 복합학위과정의 중도 탈락 및 학생지원

제8조(복합학위과정의 중도 포기) ① 복합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복합학위과정에서 의무석사학위과정으로의 전환은 불허한다. 다만, 본교의 의학교육학제 변경에 따라 4학기 이내의 재학생의 경우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2014.05.28.)

② 복합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학교, 연구재단, 지도교수 등으로부터 받은 전액을 환수조치하며 제적처리한다. 다만, 제8조 제1항에 의거, 전환을 허가받은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14.05.28.)

제9조(학생지원) ① 복합학위과정생으로 선발된 경우 등록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.

②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복합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다만, '수료 연한' 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

제5장 수업년한·교육과정·이수학점·학위수여·논문제출

제10조(학위과정 및 수업년한) ① 1, 2학년(1~4학기)의 4학기는 의무석사학위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
② 3, 4, 5학년(5~10학기)의 6학기는 학술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술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6, 7학년(11~14학기)의 4학기는 의무석사학위과정 3, 4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
④ 학술박사학위과정의 수료년한은 3년으로 하며,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기타 학술박사학위의 교육과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복합학위과정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1조 (학술박사학위 이수학점) ① 학술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하되, 이수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합학위과정 운영위원

회에서 따로 정한다.

②학생은 의무석사학위 과정에서 각 학년 석차 상위 50% 또는 매학기 평점평균이 2.6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며,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복합학위과정(MD-Ph.D)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③학술박사학위 과정 중에도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.0이상 이어야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

제12조 (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)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과정 80학점과 대학원 의학박사과정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
2.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의 학위논문 제출 자격 기준에 준하여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
3. 학술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학술박사학위 논문 등을 국제학술지(주저자로 게재한 SCI급 Impact factor 합이 5.0 이상)에 게재 예정 이상인 자
4.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합학위과정(MD-PhD)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일 이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장 운영위원회

제13조 ① 복합학위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합학위과정(MD-Ph.D)운영위원회(이하 '운영위원회')를 둘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전임교원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
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복합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
2. 복합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획, 수립, 개발사항 및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 - 가. 학술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 결정 관련 승인
 - 나. 학술박사학위과정 진입 시기 승인
 - 다. 학술박사학위과정생이 제출한 경과 보고서를 심의하여 진행상황 점검

2-3-4~4 제2편 학 칙

라. 학술박사학위 과정 수료 승인

3. 복합학위과정의 학생 지도, 지원, 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위원장 및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

제1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의전원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사안에 따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제반사항 처리를 담당한다.

제5장 보칙

제17조(준용규정)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천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, 대학원 시행세칙,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